

대북무인기 불법 침투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1. “유엔사령관”은 책임져라.

무인기가 작년 9월과 올해 1월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를 통과하여 북으로 날아갔다. 정전협정 16항에 의해 쌍방은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해야하며, 6항에 의하면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에서, 로부터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규정 95-3. 한국전술구역비행절차」에 의하면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상도리-당산리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인 P518, S구역이다. 파주시 적성면과 파평면 장파리의 경계부 역시 비행금지구역인 P518, T구역이다. 이 규정은 정전협정관리를 위해 북의 남침보다 남의 북침이나 도발행위를 통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의 항공안전법상 공역위원회에는 주한미군 장교가 포함(시행령 제10조)되어 있다. 미군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1994년 평시작전권환수에서 제외된 한미연합부대인 오산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무인기가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를 향하여, 에서, 로부터 적대행위를 일으키기 전에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충분한 감시·통제 자원을 갖고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명백한 적대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한 것이다.

정전협정 17항에 의해 “유엔사령관”은 이들 협정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남북간 평화교류사업을 위한 비무장지대출입과 관련해서는 사소한 것까지 가로 막던 “유엔사”가 정작 중대한 정전협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는 유엔사가 오랫동안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 챙겨온 낡고 불편한 관행을 반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2. 국방부장관은 책임져라

9.19남북군사합의서 1조 3항에 의하면 무인기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기준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설정되었다. 9.19남북군사합의서는 효력이 중지되었을 뿐 폐기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무인기 월경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통제자원을 확보해 왔다.

2021년부터 안티 드론 레이더가 실전배치 되었다. 2022년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방공 레이더가 수신한 표적 탐지정보를 자동 추적·관리하는 ‘능동형적 추적기술’을 개발했다. 2024년 6월 합참은 북한오물풍선의 탐지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풍선보다 훨씬 큰 무인기가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말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무인기를 격추시키기 위한 지대공 단거리 유도탄 ‘신궁’과 고출력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1’도 이미 실전배치 되어 있다. 강화도와 교동도에도 이 사건이전에 새로이 레이더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무인기에 대한 탐지, 요격체계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도 합참은 무인기를 못 잡은 것인가, 안 잡은 것인가? 만약 못 잡은 것이라면 신속획득사업으로 조기 배치된 이들 사업 전체가 무용지물이었음을 증명한 사례가 될 것이다. 만약 안 잡은 것이라면 아직도 군내부의 내란세력이 청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한 사례가 될 것이다. 사문화된 정전협정을 대신할 9.19남북군사합의를 복원시키고자 한다면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3. 정부는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항공안전법 제1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인기를 비행시킨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 불법사용 등의 죄를 물어 처벌된다.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

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비행제한공역은 국방부장관에게 권한이 위임된 비행금지구역의 의미(시행규칙 제308조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법 제79조제2항)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기에(시행령 제26조③) 국방부장관은 무인기 침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

한편 1986년 국내에서 발효된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헤이그 제2협약)」 제1장에 의하면 개인은 교전자의 자격을 갖지 못하며, 교전자의 자격없이 전쟁을 개시하는 것은 국제전쟁법 위반이다. 또한 이 협약 제41조에 의해 개인이 휴전협정의 조건을 위반한 때에도 처벌할 수 있다.

2026년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이는 전쟁개시행위나 마찬가지다.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국가에 전쟁개시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고 했다. 형법 제111조 사전(私戰) 죄이다. 이에 따르면 외국에 대하여 사전私戰, 즉 개인으로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 자는 미수에 그쳐도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 국제법이 국내형법을 통해 실행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만약 피의자의 뒤에 정부기관이 관여되어 있다면 이는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제99조 일반이적죄 위반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정부는 법률에 따라 무인기 침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내란잔존세력을 발본색원하라.